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52554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나202160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525545 판결

전 문

원고 1. 기술신용보증기금

2.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피고 A에 대한 소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 C의 파산관재인 D

피고 1. E 주식회사

2. A

변론 종결 2014. 3. 20.

판결 선고 2014. 6. 12.

주 문

1.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269,072,069원 및 그 중 266,145,849원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13. 8. 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A은,

가.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D에게 177,189,135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파산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D에게 193,280,205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3.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원고 보증기금'이라 한다)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1	2010. 3. 16.	2011. 3. 15.(2013. 3. 15.)	36,000,000원(40,000,000원)	중소기업은행
2	2010. 3. 16.	2011. 3. 15.(2013. 3. 15.)	144,000,000원(160,000,000원)	중소기업은행
3	2010. 11. 25.	2011. 11. 24.(2012. 11. 23.)	85,000,000원(100,000,000원)	중소기업은행

나. 피고 회사는 원고 보증기금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증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 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보증기금이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B, C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 보증기금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원고 보증기금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1. 30.까지는 연 14%, 2012. 12. 1.부터는 연 12%이다.

다. 피고 회사가 2012. 8. 23.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 보증기금은 2012. 9. 26.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267,313,939원(= 제1 신용보증약정 36,259,981원 + 제2 신용보증약정 145,080,572원 + 제3 신용보증약정 85,973,3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그 후 원고 보증기금은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중 2012. 9. 26. 1,167,290원, 같은 달 27. 800원을 각 회수하였는데, 위 각 회수된 금원에 대하여는 447원의 확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로 인한 원고 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한 비용으로 합계 2,942,170원을 지출하였다가 그 중 15,950원을 회수하였다.

마. 한편, B, C는 2012. 6. 21.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1. 접수 제14406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14406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 보증기금은 2013. 6. 12.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피고 A을 상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B은 2013.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4811호(2013하면4811호)로, C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4812호(2013하면4812호)로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자 B, C의 파산관재인으로 D이 각 선임되었다. 파산관재인 D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 보증기금이 제기한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소송을 수계(이하 파산관재인 D을 '원고 소송수계인'이라 한다)한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사. 한편, B, C는 회생절차 진행중이던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를 받아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4,050,000원을 제외한 895,950,000원을 B, C가 각 1/2지분인 447,975,000원씩 갖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B와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자인 확정일자있는 임차인 G에게 각 190,000,000원씩,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각 64,694,795원씩 변제하였고, B이 마포세무서에 조세채무 16,091,070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후 남은 금액인 B의 177,189,135원과 C의 193,280,205원을 각 A에게 변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보증기금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구상금 합계 269,072,516원[= 잔존 대위변제금 266,145,849원{= 267,313,939원 - 회수금 합계 1,168,090원(= 1,167,290원 + 800원)} + 채권보전비용 2,926,220원(= 2,942,170원 - 회수금 15,950원) + 확정지연손해금 447원] 중 원고 보증기금이 구하는 바에 따라 269,072,069원 및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 266,145,84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2. 9. 26.부터 2012. 11. 30.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3. 8. 2.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소송수계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소송수계인은, B, C가 피고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 3, 4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파산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나, 한편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바,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1, 13, 14,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 C가 2012. 6. 21.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7. 17. B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단110호로, C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단109호로 각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각 2012. 8.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B이 대표이사로, B의 부인인 C가 사내이사로 있던 피고 회사도 2012. 9. 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바, 피고 A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당시 B, C는 채무초과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3. 3. 22.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B, C의 각 회생절차 역시 2013. 4. 2. 각 폐지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5. 9. B, C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각 2013. 8. 20.에 파산선고를 받았던 점, ③ 그럼에도 B, C가 그들의 채권자들 중 한명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고 A이 우선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행위는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앞서 피고 A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다른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라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에 해당하며, B, C는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변제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A은 B, C와의 진실한 금전거래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일 뿐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3)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A은 남편인 H 명의로 C에게, 2010. 7. 5. 1,000만 원, 2010. 7. 8. 6,000만 원, 2010. 8. 2. 1억 7,000만 원, 2010. 9. 17. 합계 1억 4,400만 원, 2012. 2. 16. 1억 원 등 합계 4억 8,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6,000만 원을 2010. 12. 16. 변제받은 사실, ② C가 2010. 9. 15.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피고 A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빌렸음을 확인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남편인 H과 함께 서울 서초구 I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피고 A은 2008.경 B, C의 딸의 신혼집을 중개하면서부터 B, C를 알게 되었고, 그 후 2010. 7. 5.부터 약 1년 7개월간 B, C와 수차례 금전거래를 해왔는바, B, C를 알고 지내면서 금전거래를 하여 온 경위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 A은 B, C의 경제사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동안 별다른 담보 없이 B, C에게 금전을 대여해오던 피고 A이 2012.에 이르러서야 금전대여를 요청하는 B, C에게 담보제공을 요청한 점, ③ 이에 따라 그동안 발생한 채권들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은 2012. 6. 21. B,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B, C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 A과 B, C 사이의 금전거래가 진실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A은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B으로부터 지급받은 177,189,135원, C로부터 지급받은 193,280,20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소송수계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3.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보증기금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와 원고 소송수계인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판사박평균

판사한동석

판사강성영

별지